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79
----------	-----

2021. 3. 17.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5. 김진홍 의원 등 6명

나. 상정의결

- 제2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1. 3. 17.)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김진홍 의원)

-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타 조례의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구 조례를 현행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강남교육지원청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함(안 제7조제2항제7호)
- 나.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36조제1항)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상원)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에 따라 김진홍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기관명이 변경되고,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타 조례의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제2항제7호의 “강남교육지원청”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의 명칭변경(2016. 8. 2)에 따른 사항이며,

안 제36조(자원봉사자)제1항 중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7호1)”를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제9호2)”로 하는 사항은 인용 조례의 전부개정(2018.10. 5)에 따른 사항으로

이를 의원발의로 현행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 등이 적기(適期)에 제·개정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 “강남교육지원청”의 기관 명칭이 2016년도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었고, 본 조례에 인용되어 있는 타 조례의 규정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도 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무관심하였다고 보이므로 향후에는 관련 조례 등을 적기에 제· 개정하여 현행화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답 변 : 앞으로는 적기에 개정하도록 하겠음

1) 개정 前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제3조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